

2023 Vol. 3

지적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인권침해실태*

김지영 선임연구위원 | 심리학 박사, jkim@kicj.re.kr

발행일 2023년 03월 31일 발행인 하태훈 발행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요키워드

장애인, 인권보호, 신뢰관계인동석제도, 발달장애인전담수사관, 보조인

* 관련보고서: 김지영 외 3명(2022.12.), 지적장애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정신적 장애는 장애 특성상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무고한 피의자가 되거나 범행비례, 책임비례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지적장애인은 경미한 성범죄와 절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데 범죄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판결이 극히 드뭄.
- 수사초기단계부터 지적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나 대부분이 수사가 진척된 이후 신뢰관계인 동석이 이루어지고 발달장애인전담수사관도 절대 부족하며 전문성도 떨어짐.
- 지적장애인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인 대부분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의가 없어 양형변론에만 치중함.
- 검사나 판사도 유죄를 예단하여 무성의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의 행정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본인의 재판기일을 알지 못하거나 재판결과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함.
- 교정시설에서 심각한 지적장애인은 따로 수용되지만 경미하거나 경계성인 지적장애인은 일반인과 혼거하면서 폭력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되어 추가형을 받기도 함.
- 장애등록여부보다는 의사결정과 판단에 문제가 있는 취약한 성인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수사기관이 자체 식별지표를 통해 의심된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신뢰관계인 등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구금시설과 보호관찰소를 비롯한 모든 형사사법기관에서 장애인 권리와 지원방안에 관한 체계적 훈련커리큘럼 마련이 필요하고 진술조력인을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인으로 확대하며 보조인 선임의 요건을 최대한 완화하여 보조인이 독립하여 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명확히 하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등에 해임가능하도록 함.
- 지적장애인범죄자의 징역형을 최소화하고 사회내처우를 적극활용하며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나 장애인단체 등이 형집행단계의 장애인을 접촉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01 |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논의의 배경

- 정신적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달리 외관상 장애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음. 범죄수사규칙상 체포 당시 피의자에게 권리를 고지한 후, 피의자가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나 실제 수사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즉 체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음.
- 지적장애인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원 노숙인 소녀 살인사건’ 등에서와 같이 무고한 피의자가 되거나 범행비례, 책임비례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본고는 지적장애피의자가 수사·재판·교정단계에서 받는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고 형사사법기관에서 운영되는 지적장애 피의자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을 제언하는 것임.



지적장애인 범행특성 및 재판실태

- 비지적장애인들까지 포함하여 2020년 발생한 전체범죄의 죄명 분포와 지적장애 피고인들의 죄명 분포를 비교하면, 지적장애인들의 범죄는 성폭력범죄와 절도범죄에 치중됨.
-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지적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은 낮고 대인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은 높음.
- 지적장애인은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데 범죄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나 심신상실이 나 심신미약 등이 인정되어 무죄를 받는 비율은 적고 범죄혐의를 소명할 능력이나 보호력도 없어 유죄를 받는 경우가 있음.
- 사례분석결과 무죄, 선고유예, 형의 면제 등을 받은 판례를 보면 피고인의 지적수준에 대해 상세한 검사결과가 기술되어 있거나 조사절차상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되지 않은 점을 판사가 고려한 경우임.

수사·재판·교정단계에서의 인권침해

- 수사착수이전에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판별하는 절차가 없음. 현재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신뢰관계인 동석의 대부분이 수사가 진척된 이후에 이루어짐.
- 발달장애인전담조사관의 수가 절대 부족하고 이들의 역량도 부족하며 수사기관에서는 이 제도를 기관의 편의대로 운영하고 있음.
- 신뢰관계인 동석은 장애인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 이외에 원활한 의사소통의 목적도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현재 신뢰관계인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임. 적극 개입이 가능한 보조인제도는 보조인으로 활동하는 인력도 없고 경찰이나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잘 알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임.
- 지적장애인의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는데 국선변호인의 대부분이 무성의하고 지적장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양형변론에만 치중함.
- 검사나 판사도 지적장애인의 유죄를 예단하고 기소와 판결을 진행함. 또한 법원의 행정도 글을 읽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이 다수임에도 공판기일이나 판결 등을 전화나 기타 방법없이 오직 문서로만 송달하는 등 매우 차별적임.
- 교정이나 보호관찰 모두 지적장애인을 판별하고 교육하는 전문인력이나 특화된 시설이 없는데 특히 지적장애인은 보호관찰기관에서 실시하는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을 완수할 수 없고 전자발찌 규정위반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음.
- 교정시설에서 심각한 지적장애인은 따로 수용되어 생활지원을 받지만 경미한 지적장애인, 경계선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 과 같이 혼거생활을 하면서 폭력이나 갈취의 피해를 입기도 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되어 추가형을 받기도 함.



- 장애인 등록여부보다는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나 지표가 필요함. 등록하지 않은 지적장애인도 많을 것이므로 영국의 사례와 같이, 식별지표를 통해 의심된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신뢰관계인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함.

- 신뢰관계인에게 수사의 형식적 절차가 공정하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동석하여 함께 감시하고, 잘못되었을 시 그에 대한 의견을 개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수준의 권한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지적장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고지의무를 전달함에 있어서의 의사조력을 허용해야 함. 신뢰관계인이 그 절차에 참여하면서 올바르게 진술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 기재될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두는 것이 필요함.
- 구금시설과 보호관찰소를 포함한 모든 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의 권리와 지원방안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함. 미국 NCCJD의 ‘Pathways to Justice’ 프로그램과 같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나 장애인 분야 등 비사법 영역과 협업하는 방안이 필요함.
- 지적장애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사하거나 신문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 진술조사 전에는 진술조력인이 사전에 당사자를 면담하고 장애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진술조력인과 수사관 및 변호인이 서로 협의하여 의사소통 방식과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필요함. 또 재판에 앞서서는 영국의 GRH와 마찬가지로 해당 장애인의 진술특성과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미리 계획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진술조력인을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로 확대하고 보조인의 역할과 기능, 권한의 범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지적장애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계 기관이나 보호자를 연계해야 함. 보조인의 선임의 요건은 최대한 완화하고, 보조인이 독립하여 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명확히 하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수사나 재판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이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임.
- 지적장애 범죄자에게 징역형을 최소화하고 사회내 처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호주나, 일본의 사례처럼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나 장애인단체들이 형집행단계의 지적장애인을 접촉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